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기관 이전에 따른 부임 과정에서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14. ~ 11. 24.)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호 중 “받고”를 “받거나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공가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여 부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가)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(제11호의 경우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.	제19조(공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원격지(遠隔地)로 전보(轉補) 발령을 <u>받고</u> 부임할 때	5. ----- ----- <u>받거나 기관 소재지가</u> <u>이전하여</u> -----
6. ~ 13. (생략)	6. ~ 1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44